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5326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종합

담당변호사 김영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 선고 2020. 6. 18.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단5267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총 공사대금 1,925,000,000원(부가세포함) 중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인허가 종료 후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토목공사 시작 전에 잔금으로 1,67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7. 12.12.부터 2018. 12. 31.까지 1,00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제작·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피고의 계약 이행 및 원고의 계약해제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이행)

1을(피고)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2 을은 도면을 기초로 작성한 공사에정공정표, 기자재 내역 등을 계약체결 후 갑(원고)에게 제출하여 시공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갑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없을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L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갑은 본 조 제1항 사유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본 조 제1항 외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로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2017. 12. 15. 위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8. 1. 10. 토목설계비 견적을 받았고, 2018.3. 5.

영덕군수로부터 원고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C 역시 2017.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작·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단,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설비용량은 100KW급이고, 공사대금은 22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018. 3. 30. 피고가 발전사업허가증 발급을 지연하고 아무런 공사 진행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위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발전행위허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의 대표자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18. 5. 18. D에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D은 원고에게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 태양광발전사업허가(2018. 3. 5. 승인)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한달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 본 계약자인 A(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이에 귀사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제18조(갑의 해제)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도 안되었으며 추가로 사업계획서도 영덕군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진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사항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일억원과 위약금을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토목 설계비용의 견적을 받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거나 일부를 이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은 몰취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가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고, 도면을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기자재내역 등을 계약체결 후 원고에게 제출하여 시공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위 설계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계약 이행 항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지 토목설계비 견적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피고를 원고에게 연결해 준 C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음에도 C은 그 중 50,000,000원만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계약금으로 5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나 C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2018. 1. 16.경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덕군에 원고의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 점, 이 사건 계약보다 앞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도 최초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이후 단계별로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는 제1심 증인C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은 E이 C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E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진술한 경찰 진술조서인데, C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명목이

'사업계획서 인쇄비', '사무알바비' 등 부수적인 내용이거나 과연 이 사건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보이고, 그 금액의 합계도 17,911,990원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계약금 50,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7. 12. 12. 이후 위 금액 이외에 이 사건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이는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2018. 3. 5. 원고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 계약의 이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원고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계약의 이행 계획 및 그 이행 여부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토목 공사인데, 이 사건 계약에 서 정한 준공일이 2018. 12. 31.인데도, 피고는 2018. 3. 5.에서야 영덕군수로부터 발전행위허가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목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통상 개발행위허가는 발전행위허가와는 달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당시까지도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김종근, 판사 이세라